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운영규정

(제정 2002.12. 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경영지원 사업과 중소기업의 생산 애로기술을 지역 현지에서 해결하고, 산·학 협동을 통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지역사회와 중소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부설기관은 전주대학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업) 센터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참여 업체에 대한 대학보유 실험실습용 연구시설 및 기자재의 공동활용
2. 산·학·연 연구자원 지원(전문 교수진 및 대학원 활용, 생산관련 기술정보교류 등)
3. 관련 벤처기술 사업 분야와 교류 지원
4. 기술개발과제와 관련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획득 권장 및 지원
5. 기타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센터장) ①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제5조(간사) 간사는 센터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교 교직원 중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직원) 센터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담당 직원을 둘 수 있다.

제 3 장 위 원 회

제7조(운영위원회) 센터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센터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② 위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운영계획
2. 센터의 예산편성과 집행 및 결산

5-2-4-2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운영규정

3. 센터의 규정 및 세칙의 제·개정 및 폐지
4. 각종 간행물의 발간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재 정

제11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중소기업청 지원금, 전북도청 출연금, 참여기업 분담금, 대학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회계년도) 센터의 회계년도는 학교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